

GC Cell 이사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22.09.01>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개정 2022.09.01>

제 3 조 (권 한)

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주) 제 2 항의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제 14 조에서 규정하였음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22.09.01>

제 5 조 (의 장)

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한다.

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.

<개정 2022.09.01>

제 5 조의 2 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)

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.

<본조신설 2022.09.01>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<본조신설 2022.09.01>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<개정 2022.09.01>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9.01>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(특별한 이해관계 등)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09.01>

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22.09.01>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회사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5) 중요한 CI의 제정 및 변경
- (6) 이사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10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.개정 및 폐지 등
- (1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3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4)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업양수도
- (15) ESG 관련 주요 사항

<개정 2022.09.01>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결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승인
- (2) 신주의 발행
- (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4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- (5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6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7) 금육백억원 이하의 전환사채의 발행
- (8) 금오백억원 이하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9)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
- (10) 건당 50 억원 이상의 장·단기 차입
- (11) 건당 50 억원 이상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
- (12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3) 자기주식의 이익 소각
- (14) 중간배당
- (15) 건당 50 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처분
- (16) 주식 분할 또는 병합
- (17) 건당 50 억원 이상의 파생상품 거래

<개정 2022.09.01>

4. 투자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- (1) 건당 50 억원 이상의 신규사업
- (2) 건당 50 억원 이상의 신제품 개발 및 개발과제 선정
- (3) 건당 50 억원 이상의 특허권 양수도 및 기술도입, 이전, 제휴 (License In or Out)

- (4) 건당 50 억원 이상의 공장 및 연구소 신·증축
- (5) 건당 50 억원 이상의 유·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
- (6) 건당 50 억원 이상의 비경상적 경비지출
- (7) 1억원 이상의 기부금(동일 대상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누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). 단,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긴급 구호에 따른 기부는 선 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.

<신설 2022.09.01>

5. 영업 및 생산에 관한 사항

- (1) 건당 50 억원 이상의 판매계약 및 거래중단
- (2) 건당 50 억원 이상의 제·상품 폐기 결정
- (3) 건당 50 억원 이상의 생산 활동 중단

<신설 2022.09.01>

6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,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7. 기타

- (1) 명의개서대리인
- (2) 기타 결의 사항 (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)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- 2.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
- 3.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
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<개정 2022.09.01>

제 11 조 (이사회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1. 내부거래위원회
-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② 각 위원회의 목적, 권한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③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<본조신설 2022.09.01>

제 11 조의 2 (긴급집행)

① 경영 목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즉시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,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전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추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대내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.

<본조신설 2022.09.01>

제 12 조 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)

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간 사)

①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이사회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7 조 (운 영)

의장이 이사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식·음료, 선물 제공 및 친목 도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<본조신설 2022.09.01>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 제정 시행 한다.
2.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 개정 시행 한다.
3.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 개정 시행 한다.